

-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따라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제출자료	요청근거
대영건설(주) (이영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46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경북예천2015-07-01)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혐의 소명자료 일체	「건설산업 기본법」 제49조

3. **공고기간** : 2018. 11. 6. ~ 2018. 11. 22. (16일간)

4. **공고방법** : 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에 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자본금 미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미제출시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4-650-6331)

2018. 11. 5.

예 천 군

